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39
------------	-----

제출일자 : 1998. 10.  
제출자 : 중 구 청 장

## 1. 개정사유

- 정년단축 등의 지방공무원법이 개정('98.9.19)되어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고용직 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다만 즉결심판 또는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9조의2(휴직기간) 제9조 제1호의 규정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9조의3(휴직기간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 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제9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 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함.

## 3. 근거법규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제3호
- 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 4. 개정조례안 : 붙임

## 5. 신·구 조문 대비표 : 붙임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휴직기간)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9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표중 “58세”를 “57세”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휴직)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9조(휴직) 임용권자는 고용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생 약)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휴직기간)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신 설》	제9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고용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고용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별 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직종 · 직명 및 근무상한연령표	[별 표]												
<table border="1"> <tr> <td>구 분</td><td>1 종</td></tr> <tr> <td>직 명</td><td>지도원</td></tr> <tr> <td>근무상한연령</td><td>58세</td></tr> </table>	구 분	1 종	직 명	지도원	근무상한연령	58세	<table border="1"> <tr><td>-----</td><td>-----</td></tr> <tr><td>-----</td><td>-----</td></tr> <tr><td>-----</td><td>57세</td></tr> </table>	-----	-----	-----	-----	-----	57세
구 분	1 종												
직 명	지도원												
근무상한연령	58세												
-----	-----												
-----	-----												
-----	57세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9)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98. 10. 31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 : '98. 11. 7
- 라. 위원회 상정 : '98. 11. 13

##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 '98. 9. 19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골자로는, 고용직공무원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를 “휴직을 명할수 있다”로 개정하고, 휴직기간 및 휴직기간의 효력등의 조항을 신설 하였으며,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개정하는 것임

##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송원수)

- 지방공무원법의 개정내용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개정조례표준안에 근거하여 관련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